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2.6.2. / (총 3 매)	담당부서	장애인서비스과
과 장	백 경 순	전 화	044-202-3340
담 당 자	유 운 용		044-202-3341

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합니다.

- 산정특례 제도 유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.1만여 명 지원 -
-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(3년)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.
 -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 -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·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,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.
 -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,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,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,

-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(인정조사)보다 낮은 경우,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·유지한다
- 다만,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·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.

□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.1만여 명(발달장애인 1.2만 명)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< 종전 인정조사(산정특례) 수급자의 갱신(변경)에 대한 급여 조정 >
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	월 한도액 산정특례
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증가	종합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
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감소	종합조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지급

-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「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」 지침을 개정, 오는 7월 1일(금)부터 시행 예정이며,
 -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,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 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, 1인·취약 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”라고 강조하며,
 - “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,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

붙임 1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

- (근거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
- (목적) 일상생활·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
- (대상) 6~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수급 자격을 받은 자('21년 12.7만 명)
- (지원규모) 활동지원급여(활동지원등급별 산정) + 특별지원급여(생활환경 고려)
 - * 최소 약 60시간(889,000원) ~ 최대 약 480시간(7,105,000원)
 - * 활동지원등급 : 기능상태, 사회활동,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
- (예산) '21년 15,070억 원 → '22년 17,405억 원
 - 시간당 기본단가 ('21년)14,020원 → ('22년)14,800원
- (급여종류) 활동보조(신체·가사활동·이동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 - (활동지원기관)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, 수급자 수,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
 - (활동지원인력) 활동보조는 교육(50시간)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,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,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

〈 국정과제 〉

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

- (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)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,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